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657

2020년 9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

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서윤기 의원]

가. 제안이유

○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 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'행상 또는 노점'을 '거리가게'로 함(안 제13조제2항제1호)
- 2) '유모차'를 '유아차'로 함(안 제13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[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]

가. 개요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항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		권고사유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セエバザ
1	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	행상/노점상	거리가게	'거리가게'는 '행상/노점상'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순화어(2013)
		유모차	유아차	유모차는 '어미(母)'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 필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권고사유는 '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'로 현행의 용어를 대안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.
- 권고사항은 '행상 또는 노점'을 순우리말이며, 서울시 행정 순화어인 '거리가게'로 수정하고, '유모차'는 어머니(母)만 표현되어 있어 평등육아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'유아' 중심의 언어인 '유아차'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- 5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- 6. 토론요지 : 생 략
- 7. **수정안 요지** : 생 략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3명, 전원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10. 기타 **필요한 사항**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"행상 또는 노점"을 "거리가게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유모차"를 "유아차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행위의 제한) ① (생 략)	제13조(행위의 제한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	2
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	
아니 된다.	<u>.</u>
1. <u>행상 또는 노점</u> 에 의한 상행위	1. <u>거리가게</u>
2. 관리차량, <u>유모차</u> , 휠체어 이외	2 <u>유아차</u>
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	